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가단52271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

피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최장섭

변 론 종 결 2024. 8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,827,847원 및 그 중 111,475,161원에 대하여 2023. 6. 15.부터 2024. 7. 19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최종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,827,847원(대위변제잔액 111,475,161원 + 확정손해금 1,352,686원)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111,475,16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. 6. 15.부터 이 사건 2024. 7. 1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후 송달일인 2024. 7. 19.까지는 연 8%의 약정지연손해금율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.

판사 박지원

별지